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8. . . (제 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서식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 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

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대통령령 제 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제4조의2에 따른 청년창업자 및 예비 청년창업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서에 제2항”을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으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발명평가의 활성화 계획 및 평가기관의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에 대한 상시 고용 여부

가.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자연계(공학, 이학, 농학, 약학 등)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3명 이상
 나. 발명 또는 기술의 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구체적인 평가 기법 및 평가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보유 여부
 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기법 및 매뉴얼
 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망
 다.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
 장비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 여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법 제50조의5제1
 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4.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

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조합(투자조합 포함)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 운영 위탁기관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
 여야 한다.

1. 특허공제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특허공제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규정 등 특허공제사업 운영
 에 대한 제반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
 업 운영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과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
 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실적
2. 자산투자 계획 및 실적
3. 주요 계획의 변동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탁한 업무
 의 수행에 관한 사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담당자성명	전화
	이메일주소	팩스

「발명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를 정명할 수 있는 자료 2.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명의 평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③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운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설>

2. 구체적인 평가 기법 및 평가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보유 여부

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기법 및 매뉴얼

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망

다.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3.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 여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신 설>

4.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조합(투자조합 포함)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 운영 위탁기관 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특허공제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특허공제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규정 등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특허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위탁
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과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특허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실적
2. 자산투자 계획 및 실적
3. 주요 계획의 변동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탁
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운
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481-8180